

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

2017.11.27. 제정 2020.04.01. 일부개정 2021.11.01. 폐지

<학생상담센터>

제 1 조(명칭) 본 센터는 ‘동명대학교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 라 한다)’ 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본 센터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생생활의 심리적·정서적인 문제를 예방·해결하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.

제 3 조(업무)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1.11.1.)

1. 학생 상담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
2. 개인 심리상담 업무
3. 집단 심리상담 업무
4.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업무
5. 대학생활적응력검사 및 부적응 학생 상담 업무
6. 특별상담 및 위기상담 업무(소수집단, 중독, 도박, 자살 등)
7. 상담원 위·해촉 및 강사료 지급 업무
8. 상담원 교육수련 업무
9. 지역사회 연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업무
10. 학생상담연구지 발간 업무
11. 삭제 <2021.11.1.>
12. 삭제 <2021.11.1.>
13.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업무 (신설 2021.11.1.)
14. 기타 상담관련 연구 업무

제 4 조(조직 및 운영) ① 본 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담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1.11.1.)

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상담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담 및 객원 상담원의 자격은 상담전문가로서 상담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
2. 인턴(수련) 상담원의 자격은 상담전문가로서 상담분야 석사과정 재학 이상 또는 상담심리학과 졸업자로서 6개월 이상 상담경력이 있는 자

단. 상담원의 임용 또는 상담용역 계약,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센터 및 운영위원회는 업무 유관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연계 지원 및 통합체제로 운영

한다.

⑤ 삭제 <2021.11.1.>

제 5 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센터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과,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센터 운영 및 학생상담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각종 상담 활동에 대한 자문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자문위원)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다른 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0.04.01.)

제7조(개인정보보호) 센터의 교직원과 상담원은 업무를 통해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상담 목적 외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.(본조신설 2020.04.01.)

제 8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본조신설 2020.04.01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